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2. . .<br>(제 회)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제18600호, 2021. 12. 21. 공포)을 통해 지역균형뉴딜의 정의 및 지원근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원칙 등을 규정함.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제18812호, 2022. 2. 3. 공포)을 통해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 이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획의 수립 절차,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가능지구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입지 선정의 최적화와 혁신역량의 집적화를 촉진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 3. 주요내용

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4, 제11조 내지 제14조)

- 1)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2)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협의·조정·평가 절차

나. 초광역협력사업 대상 지원(안 제14조의3, 제15조)

- 1) 지원의 대상이 되는 초광역협력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내용
- 2) 초광역권산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주체의 확대

다. 지역균형뉴딜의 선정 절차(안 제15조의11)

- 1) 시·도별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포함사항
- 2)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기준

라.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안 제16조의2)

- 1) 공공기관의 신설·인가 시 입지 결정 계획 포함사항 및 심의 절차
- 2) 입지 결정 계획 심의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사항

마.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가능지구 유형 확대 (별표 제1의2)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 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 및”을 “장,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으로 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작성한 경우,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작성하려면 제1항의 수립지침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작성된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절차 등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광역권 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6조의4(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 시·도”를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시·도”로, “장”을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

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을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별”을 “초광역권별 또는 시·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장 및”을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으로 한다.

제14조의2제5항제3호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초광역협력사업은 아래 각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제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심의 및 평가 절차의 신속 진행
3. 공모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4. 국고 보조율의 차등 적용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우선 지원 및 펀드 조성 등 초광역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은 제30조제3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광역협력권산업”을 “초광역권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의11을 제15조의12로 하고, 제1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1(지역균형뉴딜의 선정절차)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지방자체단체 및 사업 참여 단체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에 대한 기대효과
5.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6.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또는 저탄소 기술 활용 등 정부의 디지털 또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2.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별 특성의 반영 정도
3. 지역산업 육성 시책과의 연계성
4.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성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으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12(중전의 제15조의11) 제4항 본문 중 “따른 시·도”를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 결정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2. 업무 및 수행기능
3. 기관규모(정원, 예산 등)
4. 희망 입지 및 사유
5. 그 밖에 입지 결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지 결정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지 결정 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2. 입지 희망 지역의 여건과 특성
3. 지역별 형평성
4. 국가균형발전계획 등과의 정합성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제2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의 초광역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역혁신협의회가 각각 또는 합동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을 각각 “등 지원업무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운영 등”으로 한다.

제32조제7항제3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당 시·도가 속해있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작성·제출하려는 초광역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법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제32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도 지역균형뉴딜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협력, 조사연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6조의3제1항 관련)”을 “(제16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3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8호(종전의 제13호) 중 “법령”을 “법령, 계획, 시책”으로 한다.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14. 「에너지산업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1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의2호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발전계획안”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br>-----<br>-----<br>-----<br>-----<br>-----<br>----- 한다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u>장</u>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br>-----<br>-----<br>----- 장,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u>장</u> 및 ---. |

<신 설>

제6조의3(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작성한 경우,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작성하려면 제1항의 수립지침을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작성된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절차 등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광역권 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신 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8조에 따

쳐 확정된다.

제6조의4(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른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  
체평가)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문  
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시책 및 법 제18조  
의3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  
지(이하 “부문별 시행계획등”이  
라 한다)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  
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매년 1  
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  
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신설>

또는 시·도지사-----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  
체평가) ① -----  
-----  
-----  
--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시행  
계획, 시·도 -----  
-----  
-----  
-----  
-----  
-----  
--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  
단체의 장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

③ (생 략)

제13조(부문별 시행계획등의 종합  
평가)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  
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  
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  
라 부진한 사업과 시·도별 국  
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성과에 대  
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생 략)

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  
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부문별 시행계획등의 종합  
평가) ① -----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  
-----  
-----  
-----.

② -----  
-----  
----- 장,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초광역권별 또  
는 시·도별 -----  
-----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 (생략)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자체평가 지원

4. (생략)

⑥ (생략)

<신설>

⑥ -----  
-----  
-----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  
-----  
-----  
-----  
-----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  
-----  
-----.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초광역협력사업은 아래 각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가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제안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발전계  
획에 포함된 사업

2.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와 중앙행정기관 간 법 제20  
조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이하 “초광역권 투자협약”이  
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초광역협력사  
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함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  
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심의 및 평가 절차의 신속 진  
행

3. 공모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4. 국고 보조율의 차등 적용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우선

|                                                                                                                                                         |                                                                                                                                                                                                                                                                                                    |
|---------------------------------------------------------------------------------------------------------------------------------------------------------|----------------------------------------------------------------------------------------------------------------------------------------------------------------------------------------------------------------------------------------------------------------------------------------------------|
|                                                                                                                                                         | <p><u>지원 및 펀드 조성 등 초광역 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u></p> <p>6. 그 밖에 <u>국가균형발전위원회</u>의 심의·의결을 거쳐 <u>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u></p> <p>③ <u>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은 제30조제3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
|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u> | <p><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p> <p>-----</p> <p>--- <u>초광역권산업</u> -----</p> <p>-----</p> <p>-----</p> <p>-----</p> <p>-----</p> <p>-----</p>                                                                                                                                                       |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  
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  
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  
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

② -----  
-----  
-----  
-----  
-----  
-----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

제15조의11(지역균형뉴딜의 선정

절차) 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균형뉴  
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참여 단체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  
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에 대한 기대효  
과
5.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6.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 사업 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또는 저탄소 기술 활용 등 정부의 디지털 또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2.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별 특성의 반영 정도

3. 지역산업 육성 시책과의 연계성

4.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5.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성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으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11(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략)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이하 “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 ⑦ (생략)

<신 설>

제15조의1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 결정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립 목적

2. 업무 및 수행기능

3. 기관규모(정원, 예산 등)

4. 희망 입지 및 사유

5. 그 밖에 입지 결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지 결정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지 결정 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2. 입지 희망 지역의 여건과 특성

3. 지역별 형평성

4. 국가균형발전계획 등과의 정합성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제2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다.

제16조의2 ~ 제16조의6 (생략)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⑨ (생략)

제16조의3 ~ 제16조의7 (현행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와 같음)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  
-----  
-----  
-----  
-----  
-----  
-----  
-----  
-----  
-----  
-----  
-----

-----. 다만  
제14조의3제1항의 초광역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역혁신협의회가 각각 또는 합동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국가균  
형발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  
· 운영 등 지원업무

3. ~ 6. (생략)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  
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  
· 운영 등 지원업무

2.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략)

제31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등 지원업무 및 초광역  
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  
역권발전계획 수립·운영 등  
----

3. ~ 6.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등 지원업무 및 초광역  
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  
역권발전계획 수립·운영 등  
----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⑦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도협회의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신설>

<신설>

⑧·⑨ (생략)

제32조의2(시·도 지역혁신지원  
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혁신지  
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  
리한다.

1. ~ 5. (생략)

<신설>

같음)

⑦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4항-----  
-----  
-----  
-----

4. ~ 6. (현행과 같음)

7. 해당 시·도가 속해있는 초  
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작성·제출하려는 초광역권발  
전계획에 관한 사항

8. 법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  
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⑧·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시·도 지역혁신지원  
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시·도 지역균형뉴딜과 관련

|                                         |                                                                                                                   |
|-----------------------------------------|-------------------------------------------------------------------------------------------------------------------|
| <p><u>6.</u> (생략)</p> <p>② ~ ⑤ (생략)</p> | <p><u>된 기관 간 연계·협력, 조사</u></p> <p><u>연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p> <p><u>7.</u>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
| 연 락 처           | (044) 203 - 4419 |